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654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08년 10월 22일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년 12월 18일

올리브돈까스

정 보 공 개 서

(주)지엔에스우쿠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지엔에스우쿠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Tel: 02-3403-9095 Fax: 02-3403-9089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전화 : 02-3403-909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1P.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1P.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3P.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3P.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P.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4P.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4P.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4P.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5P.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6P.
2. 연혁	6P.
3. 업종	6P.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7P.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7P.
6. [올리브돈까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P.
7. 바로 전 사업 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8P.
8. 직전연도 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P.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9P.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0P.
11. 가맹금 예치	10P.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10P.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11P.
2. 민사소송 및 민사화해	11P.
3. 형(形)의 선고	11P.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2P.
2. 영업 중의 부담	16P.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7P.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구입 및 임차	19P.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20P.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20P.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보호	22P.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23P.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24P.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28P.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29P.
9. 광고 및 판촉활동	30P.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31P.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1P.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를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의 필요한 절차 요약	32P.
2. 가맹금 예치 절차	33P.
3.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33P.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34P.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5P.
3. 경영활동 자문	35P.
4. 신용 등의 제공 내역	35P.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36P.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37P.
2.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37P.
3. 교육·훈련의 주체	38P.
4. 교육·훈련의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8P.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39P.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9P.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39P.

별첨.

1. 2022년,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2. 거래할 품목 리스트
3.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http://franchise.ftc.go.kr>)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주)지엔에스 우쿠야	올리브돈까스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4.26	2019.05.01	장현준	02-3403-9095	02-3403-9089
	법인등록번호	110111-7091632	사업자등록번호	207-81-57947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대표이사	장현준	올리브돈까스 외 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12~현재		장현준	02-3403-9095	02-3403-908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사내이사	윤경주	올리브돈까스 외 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4~현재		장현준	02-3403-9095	02-3403-908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사내이사	박종희	올리브돈까스 외 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9~현재		장현준	02-3403-9095	02-3403-908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사내이사	최영	올리브돈까스 외 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9~현재		장현준	02-3403-9095	02-3403-908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감사	김단	올리브돈까스 외 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 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4~현재		장현준	02-3403-9095	02-3403-908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지엔에스 올떡	올떡 외 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현준	02-3403-9046	02-3403-9089
	법인등록번호	110111-3006461	사업자등록번호	215-86-56605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닭익는마을 외 2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현준	02-3403-9219	02-3403-9089
	법인등록번호	110111-4051100	사업자등록번호	215-87-2329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주)제너시스 비비큐	BBQ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3403-9114	02-3403-9059
	법인등록번호	110111-1193153	사업자등록번호	207-81-43555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계열회사	지엔에스와타미 푸드앤베버리지 서비스(주)	鳥メロ(토리메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제너시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천	02-565-9198	02-3403-9089
	법인등록번호	110111-5009059	사업자등록번호	215-87-7692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올리브돈까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 칭	올리브돈까스	올리브돈까스라는 돈까스전문점
상 호	올리브돈까스 OO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177552-0000호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별도)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984,979	951,624	1,033,355	3,253,387	289,951	109,319
2023년	2,031,140	834,396	1,196,744	2,974,949	145,340	163,390
2024년	1,424,406	755,017	669,389	2,471,878	-487,542	-527,356

※ 근거자료 : “별첨 1”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현준	대표이사	2023.12 ~ 현재	(주)지엔에스우쿠야 대표	회사 총괄
	윤경주	사내이사	2019.04 ~ 현재	(주)제너시스비비큐 부회장	BBQ 대표이사
	박종희	사내이사	2021.09 ~ 현재	제너시스그룹 재무실장	그룹 재무전략
비관련 임원	최영	사내이사	2024.09 ~ 현재	(주)제너시스 대표	제너시스 대표
	김단	감사	2020.04 ~ 현재	제너시스그룹 전무	그룹 전략기획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4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른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지엔에스 우쿠야	다른 업종	2003.09 ~ 2019.06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우쿠야(등록번호: 20080100579) 이라는 브랜드의 우동 전문점
			2019.07 ~ 현재	(주)지엔에스 우쿠야	BBQ올리브돈까스(등록번호: 20080100654) 이라는 브랜드의 돈까스 전문점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 회사	(주)지엔에스올떡	다른 업종	2007.05 ~ 현재		올떡(등록번호: 2008100650) 이라는 브랜드의 떡볶이 전문점
			2017.06 ~ 현재		분식대장(등록번호: 20170459) 이라는 브랜드의 분식 전문점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 회사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다른 업종	1999.07 ~ 2013.11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닭익는마을(등록번호: 20080100647) 이라는 브랜드의 한식 닭요리전문점
			2013.12 ~ 2015.01	(주)지엔에스 닭익는마을	닭익는마을 도리마루(등록번호: 20080100648) 라는 브랜드의 고품격 일식주점
			2015.02 ~ 현재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소신(등록번호: 20191124) 이라는 브랜드의 소고기 전문점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 회사	(주)제너시스 비비큐	다른 업종	1995.09 ~ 현재		BBQ(등록번호: 20161241) 이라는 브랜드의 치킨배달호프전문점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 회사	지엔에스와타미푸드 앤베버리지서비스(주)	다른 업종	2018. 01. ~ 현재		鳥×口(토리메로)(등록번호: 20180217) 이라는 브랜드의 이자카야 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1)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올리브 돈까스	상표사용	2008.11.21. 등록	출원번호 : 제41-2008-0001360호 등록번호 : 제41-0177552-0000호	(주)제너시스 비비큐	2028.11.21

2) 상기 상표는 귀하가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표권입니다.

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7년 11월 18일

2.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지엔에스 올리브떡볶이	올리브돈까스	서열	2007.11.18~2009.11.30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전장오	2009.12.01~2010.07.3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김병훈	2010.08.01~2011.10.3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우길제	2011.11.01~2013.06.2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주)지엔에스 우쿠야	올리브돈까스	김도균	2013.06.28~2014.12.3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정창영	2015.01.01~2017.1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최기만	2017.11.22~2018.08.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정창영	2018.08.13~2018.1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올리브돈까스	이상열	2018.11.26~2019.06.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우쿠야	올리브돈까스	김훈	2019.07.01.~2022.04.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우쿠야	올리브돈까스	김태천	2022.04.26.~2022.09.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우쿠야	우쿠야	김형욱	2022.09.30. ~2023.1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주)지엔에스 우쿠야	우쿠야	장현준	2023.12.12. ~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문정동) 제너시스빌딩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올리브돈까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돈까스 / 우동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EA)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	1	1	-	1	1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EA)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	-	1	-	-	1
2023	1	-	0	-	-	1
2024	1	-	0	-	-	1

6. 올리브돈까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올리브돈까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

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EA)

관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가맹 본부	(주)지엔에스 우쿠야	우쿠야	20080100579	우동 전문점	74 / 1	64 / 1	54 / 1
관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특수 관계인	(주)지엔에스 올떡	올떡	20080100650	떡요리 전문점	75 / 2	74 / 3	67 / 2
		분식대장	20170459	분식및치킨 전문점	1 / 0	0 / 0	0 / 0
	(주)지엔에스 에프앤비	닭익는마을	20080100647	한식닭요리 전문점	11 / 0	9 / 0	8 / 0
		닭익는마을 도리마루	20080100648	고품격 일식주점	0 / 0	0 / 0	0 / 0
		소신	20191124	소고기 전문점	0 / 0	0 / 0	0 / 0
	(주)제너시스 비비큐	BBQ	20161241	치킨및피자 전문점	2,127/70	2,249/66	2,316/71
	지엔에스와타미 푸드앤베버리지 서비스(주)	鳥メロ (토리메로)	20180217	이자가야 전문점	0 / 0	0 / 1	8 / 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직영점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올리브돈가스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 매출액(상한)		연간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548,054	68,507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경기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충남	1	548,054	68,507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 2024년 말 기준의 정상영업을 한 점포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한 물품 공급금액을 매출액으로 추정한 자료입니다.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text{매출액} = \text{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금액} \times 4.14$$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중 당사의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약 24.2% (평균재료비율 약 35% 및 공급율 약 7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는 당사에서 공급한 물품 외에 주류, 음료 등의 매출은 제외되었습니다]

○ 전체 1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며,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은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1개 가맹점 중 1개의 연간 평균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직전연도 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올리브돈까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개	5,548일 (15년2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당사에서는 지사 및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올리브돈가스 외 1개 브랜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03,07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정보공개서 33P, ‘광고 및 판촉활동’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구분	수단	지출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소계		103,070	103,070	-	-
광고	(비공개)			-	(비공개)
	소 계	67,216	67,216		
판촉	(비공개)			-	(비공개)
				-	
				-	
				-	
				-	
				-	
				-	
				-	
				-	
				-	
소 계		35,854	35,854		

※ 당사는 가맹점을 대표하는 동행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당사와 가맹점간의 비용분담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판촉비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기업금융파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3	02-449-1291
농협은행	서울기업금융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02-2112-2801

※ 자세한 예치방법은 본 정보공개서의 '32P 가맹금 예치절차' 참조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 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 사실	선고 내용
해당 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올리브돈가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임차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차비용 등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투자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이하 설명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개점행사비	/				

(가) 가입비

가입비는 올리브돈가스 영업표지의 최초 사용허락의 개시 및 가맹사업 운영 노하

우 전수에 대한 1회성 대가로써 계약체결 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하는 금
원입니다.

지급기한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로써,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
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맹금의 반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환되지 않
습니다.

(나) 교육비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조리 및 가맹점운
영 등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기술이전을 위하여 당사 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
을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숙박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로써 당사에 지
급하는 금원입니다.

지급기한은 교육신청 후 3일 이내로써 교육시작 1일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개점행사비

가맹점 그랜드오픈(최초 개점)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올리브돈가스를 적극 홍보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지급기한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로써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
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맹금의 반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환되지 않
습니다.

-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
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원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철거 및 원상회복 확인 후 7일 이내	계약종료 후 가맹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서 에서 정한 의무(간판 철거, 매뉴얼 반납 등) 및 조치가 완료된 후에 잔금이
반환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9,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개점행사비	-
계약이행보증금(VAT 없음)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투자비의 상세 내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2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납입시기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주)지엔에스 우쿠야	44,000	2,200	공사개시 전 착수금 50%이상 납입하며 공사가 종료되면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후 3일 이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견적내용 확인 후 초도상품 입고 최소 3일전	공사시작 전 본사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취소된 경우	실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간판	(주)지엔에스 우쿠야	6,600	-			크기별 차이 발생 (파사드 제외)
의탁자	(주)지엔에스 우쿠야	3,080	-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차이 발생	
주방기기	(주)지엔에스 우쿠야	19,800	-			
집기비품	(주)지엔에스 우쿠야	3,135	-			
포장기기 (1대)	(주)지엔에스 우쿠야	-	-			-
POS	(주)지엔에스 우쿠야	1,364	-		POS 본체 외	
총 계	-	77,979	3,899	-	-	-

※ 투자비의 세부내역은 점포규모,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간판, 인테리어, 외부 파사드 등 제반 금액은 당사의 운영경험에 의한 추정치로 개별 매장의 환경과 가맹점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기증설, 가스시설, 철거, 냉·난방기, 소방, 덕트공사, 외부공사, 화장실, 쇼케이스, 시스템후드, G/T합, 방풍시스템(전면후레임, 강화유리, 에어커튼 등), 테라스공사 등

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천원(VAT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선정 시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상담 및 입점 예정지 파악 → 현장조사 및 시장분석 → 최적 입지도출

(가) 점포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즉,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나)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점포 개발 업무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상권분석 자료는 점포의 입지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로서 예상매출이나 수익률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전후견인이 아닐 것 - 신용불량자 등 신용상의 문제가 없을 것 - 심신미약자 및 노약자가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 기타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근로계약서 작성 - 미성년자 친권자(부모) 동의서 작성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올리브돈가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주)지엔에스 우쿠야	소비자 총매출액의 5.5%	익월 15일까지			최초 매출 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광고비		협의로써 비용분담				
점포시설 리뉴얼	(주)지엔에스 우쿠야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는 20%~40%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사개시 전 비용정산			단,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연이자	(주)지엔에스 우쿠야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물품대금, 공사대금, 광고비 등
POS 등 사용료	(비공개)	월 19.8	당월 25일			

※ 상호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가맹점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POS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 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실제 영업 개월 6개월 미만 가맹점은 제외하였고, 실제 영업 개월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년 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한 추정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적정도매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QCS 점검	"QCS"는 Q(Quality), C(Cleanliness), S(Service)의 약자로 품질, 청결, 서비스를 뜻하며, 가맹점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가맹점운영원칙	수시	문의: 전략기획팀 (02-3403-9095)

(가)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당사가 인정하는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귀하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 또는 올리브돈까스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비용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추가 교육비	협약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 시
점포 이전비	협약하여 부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 시

※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향후 가입비,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교육비 등 가맹점사업자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들의 지급조건이나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황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나)목의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목 및 (다)목에 의해 당사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합니다.

(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그로부터 7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올리브돈까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2. 거래할 품목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올리브돈까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공급제품의 품질과 동일하다는 서면 입증을 통해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제품을 사입할 수 있으나, 사입으로 인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공급받은 물품을 타인(타 가맹점 포함)에게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올리브돈가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올리브돈가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당사가 올리브돈가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 별도)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상품·용역	본부 제공 상품 일체
제한내용 및 조건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상품 이외의 상품,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위반 시 책임	1회 위반 시 : 구두경고 및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시 : 2회 이상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나) 귀하가 가맹본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공급 제품 품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통해 사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 제품을 사입할 수 있으나, 사입 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변동 등에 대하여 “동행위원회” 등을 통하여 전국 가맹점의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의사결정한 후 가격 등을 변경하거나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당사가 결

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p>점포 중심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점포운영의 편의성 그리고 점포예정지 상권의 상황(도로, 철도, 주요시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독립된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p> <p>단, 배달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고 특정장소에 입점하여 내점고객에 판매를 주로 하는 매장 등(특화매장 또는 특수상권)은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점포 특성에 알맞게 영업지역을 설정 합니다.</p>	<p>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는 각점을 연결한 선내에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부여함)</p>

※ 특화매장은 가맹본부가 임의대로 설치 가능하되, 특화매장의 영업지역은 지정된 장소에 국한하고 배달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p>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p> <p>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p> <p>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p>	<p>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p>	<p>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p> <p>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p>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우올리브돈까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 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 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조항
1. 가맹점사업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월3회(연속적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함)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당사가 정한 기준(매뉴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제조 또는 서비스하지 않아 당사가 2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경고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QCS 점검사항 등을 위반하여 당사가 2회 이상 지적한 경우 5.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기초과정교육 등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브랜드가치 침해 내지 다른 가맹점과 당사에 유무형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운영규칙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지적한 경우 11. 핵심원료를 당사로 부터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12. 가맹계약서 제18조, 제19조의 계약해지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제9조 제5항

※ 계약의 일반적 해지사유 및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 즉시해지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며,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일반적 해지사유	계약조항
--------------	------

1. 가격표·메뉴판·원산지표시·영양성분 분석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금지급의무(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개점행사비, 물품대금, 시설비, 로열티, 광고비 등)를 위반할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 가맹계약서 제10조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 나. 가맹계약서 제12조 [시정조치 등] 제2항에 의하여 S/V의 교육입소안내를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1조의 QCS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등 정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6.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받은 물품 등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한 경우
7. 당사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운영규칙 등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에 대하여 “갑” 으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2) 상품권사용고객, 당사와의 제휴업체(문화상품권, 오픈마켓 등) 및 쿠폰 등에 대하여 대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차등 대우를 하거나, 상품권 수령거부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 3) 기타 소비자클레임으로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저하시킨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10.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 가맹계약서 제25조[판촉]에서 정한 판촉활동이나 GMS(Genesis Marketing Strategy)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광고물 제작 시 본사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3) 매출 향상을 위해 본사가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 부착물을 규정된 장소 및 시기에 부착 하지 않은 경우
11.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 당사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2) 인근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가맹점간에 서로 합의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위반했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 입력한 경우
 - 4)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인테리어, 배달박스 등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갑” 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의 통일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 5) 핵심원료에 대해 당사의 미승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영업방침 또는 정책을 거부·철회하자고 선동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본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당사의 경영지도,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당사의 업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4.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본사와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5. 당사가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명칭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를 사용고지 안내(광고, 전화 등 포함) 하거나, 이로 인하여 당사 또는 인근 가맹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17.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위반,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

제18조

<p>타 “갑”이 사전에 POS, S/V를 통하여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18.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브랜드가치 침해 내지 다른 가맹점과 당사에 유무형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p> <p>19. 본 계약 또는 영업지역 설정계약으로 설정된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여 영업을 한 경우</p> <p>20.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	--

계약의 즉시 해지사유	계약조항
<p>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p> <p>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p> <p>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p> <p>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p> <p>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p> <p>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p>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p> <p>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p>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p>	제19조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의 수정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전 고지 또는 교육을 진행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운영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나) 당사는 양도승인 시 양도자의 계약 잔여기간 동안 기존점포의 운영을 승계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계약에 준합니다.

(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명의변경 절차에 준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명의변경 절차에 준함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올리브돈까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 당사는 올리브돈까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OPEN, CLOSE 시간은 점포에 따라 상이함)	점포에 따라 다름	가맹점 휴무 시 운영팀과 협의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함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점포 사정에 의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가) 점포운영인원(채용)기준

당사는 올리브돈까스의 가치제고 및 브랜드 통일성, 품질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푸드마이스터 및 조리코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하여 당사가 운영 또는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직접근무 여부 :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장(매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당사는 Supervisor(경영지도요원, 품질관리요원, 모니터요원 등)를 통하여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방문주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위생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방문	운영팀 품질강화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방문	운영팀 품질강화팀	

(나) 당사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및 효율적인 점포운영을 위해 가맹계약서상 “운영규칙(또는 영업방침)”을 두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Supervisor가 가맹점을 점검한 후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 운영규칙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는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교육 입소명령을 하거나,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절차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올리브돈가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구분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전국 광고	상품광고	영업환경에 따라 협의를 통해 당사와 가맹점간의 비용분담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소비자 대상 광고 (TV 등) 영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본사 부담	
	지역별 광고	없음	100%	가맹점사업자 자체 부담	지역 CATV 광고 등
판촉 행사	본사에서 전국단위로 진행하는 판촉은 연 2회 이상 가맹점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판촉비용은 일정부분 본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행사계획 공지(기간, 단가, 행사품 등) → 가맹점 행사품목 신청 → 본사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판촉비 종류 - 판촉행사 홍보비 (TV-CF, 신문 등 제작 및 홍보비)

		가맹점에 행사품목 배송 → 행사시작	- 판촉물품 등 - 디자인, 행사기획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직·간접 비용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자료,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써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예비가맹사업자 문의사항	- 전화문의 접수 및 희망지역 확인 - 담당자 배정 및 응대	45일 내외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점포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대상지역 소개	D-42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의사결정	D-38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D-35	
점포실측/설계	- 1차 투자비 산출	D-30	
임대차계약	-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D-27	
가맹점 계약	- 가맹계약 / 점포계약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자문 시 7일)후 계약체결 - 가입비, 가맹이행보증금, 교육비 예치	D-26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공사 일정확인	D-25	공사비 50%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	D-25	공사비 잔액 5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D-10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금 예치 절차

- 1) 귀하는 가맹금을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지엔에스우쿠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3)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점희망자와 당사 간에 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다른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올리브돈까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

-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귀하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을 하되, 당사는 귀하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최초 개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중의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시행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은 제외)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02-3403-9046)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귀하가 당사에 S/V의 파견을 요청하여 S/V가 파견된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되,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 운영팀 (02-3403-904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고
초기 오픈지원	가맹점 최초 오픈시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	가맹점 최초 오픈시	2박3일	운영과장 현장 운영 활동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 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가맹점 협의 또는 요청	협의	경영컨설팅 현장활동지원	
	판매촉진 행사 물품지원	가맹점 협의 또는 요청	협의	판매촉진 행사 물품지원	
홍보물	POP, 홍보물, 전단 제공	신제품, 계절메뉴 출시	수시	홍보물 지원	
배달앱 할인행사	배민, 요기요 앱 주문시 할인쿠폰 금액 분담	가맹점이 배민, 요기요 배달 앱에 가입 등록	배달앱 지속시	할인쿠폰 금액 5:5 공동 분담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올리브돈가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기초과정 교육	제조 실습	올리브돈가스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전 메뉴	실습교육	점포 오픈 전	필수교육
	직무 이론	- QCS관리(식품위생과 품질관리 교육) - 친절서비스 교육 - 점포 운영 규칙 교육 - POS 교육 및 기초세무에 대한 이해 등 - 마케팅 교육	이론교육		
보수교육		- 고객 서비스 - 고객 만족 경영 이해 - 위생 윤리 실천 - 매장환경 서비스 및 위생관리 교육 - 마케팅 교육	이론 또는 실습교육	점포 오픈 후	필수교육
갱신교육		- 계약 갱신교육		갱신 계약 시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올리브돈가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8박 10일(합숙)	5,500 (2인기준)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보수 교육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갱신 교육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 1) 교육비는 가맹계약 후 교육신청과 동시에 납입 또는 예치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가맹점의 계약자, 운영자 모두 반드시 입소하여야 합니다.
- 3) 점포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의 표기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소요기간”에서 명시된 기간보다 가맹점의 오픈이 지연되고, 가맹점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4)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 가맹점 개점 후 1년 이상 경과 시 당사의 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단,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당사의 경영지도에 의한 가맹점 점검 시 위생불량 및 조리매뉴얼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는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 6) 보수교육은 유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제품의 조리,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 없음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 없음	

별첨 1. 2022, 2023, 2024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거래할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전략기획팀(02-3403-909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bq.co.kr]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